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25
----------	-----

2024. 11. 26.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2024. 11. 4. 이성수 의원 등 11인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24. 11. 26.)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이성수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나. 상담분야에서 “외국인 제공 통역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6조)

- 다. 상담자를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제한함 (안 제7조)
- 라. 업무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0조)
- 마.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관련용어와 조문을 정리하였으나, 현행 조례의 “전문가무료상담실” 이 개정조례안의 “무료법률상담실” 로 명칭을 개정할 경우, 제명과 개정조례안의 규정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안 제3조에서 상담책임관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규정하고,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무료상담실” 과 “무료법률상담실” 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안 제4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분야 발굴 및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상담실의 설치에 관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구 청사” 의 취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규정이라면 “강남구청 본청” 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자치법규 적용상의 어려움을 없애는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에서는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상세히 나열하여 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상담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구민,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제한하되, 관내 주소를 둔 기업체나 사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상담자 대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에서는 구두상 예약은 방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를 개선하고자 방문예약을 추가하여 상담예약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 안 제10조에서는 상담책임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담관 지정 등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상담실의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개정안	수정안
④ <u>상담관 지정 등을 위해 상담책임관은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u>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나.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에 따라, 구민에게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도 위배

됨이 없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의 “전문가무료상담실” 과 “무료 법률상담실” 의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과 같이 “무료법률상담실” 로 규정하려고 한다면 조례의 제명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개정조례안의 용어 중 “주민” 은 “구민” 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5조의 “강남구 청사” 의 취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규정이라면 “강남구청 본청” 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자치법규 적용상의 어려움을 없애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 제3조제1호의 상담관에 대한 정의에서 “외국어 통역자” 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비춰보아 추후 개정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425

제안연월일: 2024. 11. 26.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수정이유

전문가 무료상담실의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하며, 상담책임관은 무료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해당 부서장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명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수정

나.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목적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함 (안 제1조)

다. 상담책임관을 무료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여권과장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3호)

라. 상담분야에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기존대로 유지함(안 제6조제3호)

마. 상담관의 자격 중에 “외국어 통역: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기존대로 유지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주민의 일상 생활 속 법률”을 “구민의 일상 생활 속 법률”으로,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를 “무료상담실을 설치하고”로 한다.

안 제3조제3호 중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상담”으로, “부서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안 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담실은 강남구청 본청에 설치한다.

안 제6조제1호 중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을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2항 중 “주민,”을 “구민,”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5. 외국어 통역 :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강남구 <u>전문가</u>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법률</u>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u>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u>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u>주민의 일상 생활 속 법률</u> ----- ----- ----- ----- <u>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u> ----- ----- ----- ----- ----- -----.</p> <p>제3조(정의)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 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u></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p>	<p>서울특별시 강남구 <u>전문가</u>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 <u>구민의 일상 생활 속 법률</u> ----- ----- ----- ----- <u>무료상담실을 설치하고,</u> ----- ----- ----- ----- ----- -----.</p> <p>제3조(정의)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상담책임관”이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u></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p>

제4조(설치장소) 상담실
은 강남구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상담분야) 상담분
야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2. 세무, 건축, 주택, 소
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에게 제공하
는 통역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 ① 상담책임

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강남구민의 법적
생활안정과 권익보호
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분야 발굴 및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
강남구(이하 “구”라 한
다) --. -----

-----.

제6조(상담분야) -----
-----.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
사사건 등 -----

2. 그 밖에 세무-----

<삭 제>

제7조(운영) <삭 제>

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강남구민의 법적
생활안정과 권익보호
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분야 발굴 및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
강남구청 본청 --. ---

-----.

제6조(상담분야) -----
-----.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
사사건 등 -----

2. 그 밖에 세무-----

3. 외국인에게 제공하
는 통역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 <삭 제>

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

② 상담자는 주민,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른 지역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생략)

제8조(인터넷 상담예약제) 상담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제9조(상담관) ①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외국어 통역 :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② 상담자는 주민,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제한하되, 관내 주소를 둔 기업체나 사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상담비용은 -----.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신청방법) -----

----- 방문 -----
-----.

제10조(상담관) ① -----
-----.

1. ~ 4. (현행과 같음)
- <삭제>

② 상담자는 구민,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제한하되, 관내 주소를 둔 기업체나 사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상담비용은 -----.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신청방법) -----

----- 방문 -----
-----.

제10조(상담관)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외국어 통역 :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p>② (생략)</p> <p>③ <u>상담책임관은 민원 여권과장 또는 이에 준 하는 사람으로 하되 구 청장이 임명하고, 상담 실을 운영·관리한다.</u> <u><본항신설 2009.12.1 8.></u> <u><신설></u></p> <p><u>제12조 ~ 제16조 (생 략)</u></p>	<p>②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④ <u>상담관 지정 등을 위해 상담책임관은 유 관기관과 업무협력 관 계를 구축할 수 있다.</u></p> <p><u>제11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6조까 지와 같음)</u></p>	<p>②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④ <u>상담책임관은 상담 실의 효율적이고 체계 적인 관리·운영을 위하 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 다.</u></p> <p><u>제11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6조까 지와 같음)</u></p>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법률”을 “구민의 일상 속 법률”로, “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무료상담실”로 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담책임관”이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민의 법적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분야 발굴 및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 본문 중 “청사 내”를 “본청”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세무”

를 “그 밖에 세무”로 한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 각종 법률상담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을 “구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을 “상담비용은”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인터넷 상담예약제)”를“(신청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두”를 “방문”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강남구</u> <u>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u> <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법률</u>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u>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u>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u> <u>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구민의 일상 생활 속 법률</u> ----- ----- ----- <u>무료상담실</u> ----- ----- -----.</p> <p>제3조(정의)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상담책임관”이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u></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은 강남구민의 법적 생활</p>

제4조(설치장소) 상담실은 강남구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2. 세무, 건축, 주택,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6조(운영) ① 상담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

② 상담자는 주민,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른 지역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 ③·④ (생략)
- ⑤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분야 발굴 및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
-- 본청 ----- . ----

-----.

제6조(상담분야) -----
-----.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 각종 법률상담
2. 그 밖에 세무-----

3.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삭제>

② 상담자는 구민,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제한하되, 관내 주소를 둔 기업체나 사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④ (현행과 같음)
- ⑤ 상담비용은 -----
-----.

제7조 (생략)

제8조(인터넷 상담예약제) 상담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제9조(상담관) ①·② (생략)

③ 상담책임관은 민원여권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하고, 상담실을 운영·관리한다. <본항신설 2009.12.18.>

<신설>

제12조 ~ 제16조 (생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신청방법) -----

----- 방문 -----
-----.

제10조(상담관)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5
----------	-----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 이성수 · 윤석민 · 이동호 ·
이도희 · 복진경 · 이호귀 ·
우종혁 · 손민기 · 김광심 ·
황영각 · 전인수 의원(이상 11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 나. 상담분야에서 “외국인 제공 통역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6조)
- 다. 상담자를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제한함 (안 제7조)
- 라. 업무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0조)
- 마.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률”을 “주민의 일상 생활 속 법률”로, “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를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로 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 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민의 법적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분야 발굴 및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 본문 중 “강남구청”을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호 중 “시민생활과 관련된”을 “주민생활과 관련

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세무”를 “그 밖에 세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을 “상담비용은”으로 한다.

② 상담자는 주민,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제한하되, 관내 주소를 둔 기업체나 사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9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인터넷 상담예약제)”를 “(신청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두”를 “방문”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담관 지정 등을 위해 상담책임관은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법률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u> <u>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1조(목적) ----- <u>주민의 일상생활 속 법률</u> ----- ----- ----- <u>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u> ----- ----- -----.</p> <p>제3조(정의)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 법률 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u></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민의 법적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분야 발굴 및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u></p> <p>제5조(설치장소) ----- <u>강남구(이하 “구”라 한다)</u> -----</p>
<p>제4조(설치장소) 상담실은 <u>강남구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u></p>	<p>제5조(설치장소) ----- <u>강남구(이하 “구”라 한다)</u> -----</p>

건에 따라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2. 세무, 건축, 주택,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 ① 상담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

② 상담자는 주민,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른 지역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생략)

제8조(인터넷 상담예약제) 상담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

제6조(상담분야) -----
-----.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 ----

2. 그 밖에 세무-----

<삭 제>

제7조(운영) <삭 제>

② 상담자는 주민,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제한하되, 관내 주소를 둔 기업체나 사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상담비용은 -----
-----.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신청방법) -----

----- 방문 -----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제9조(상담관) ① 상담관의 자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외국어 통역 :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② (생략)

③ 상담책임관은 민원여권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
되 구청장이 임명하고, 상담실
을 운영·관리한다. <본항신설
2009.12.18.>

<신설>

제12조 ~ 제16조 (생략)

-----.

제10조(상담관) ①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상담관 지정 등을 위해 상담
책임관은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
터 제16조까지와 같음)